남원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2016. 8. 19. 이사회 승인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남원시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4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 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남원시○○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 2 조(목적 및 지위) ① 종목단체는 해당종목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남원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목단체는 해당종목을 소관하는 도종목단체 등 도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남원시를 대표한다.

제 3 조(소재지 등) ① 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는 남원시에 둔다.
② 종목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① 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국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종목단체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도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없다.
④ 종목단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남원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 6 조(회비의 납부) ① 종목단체는 본회 규약 제6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본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 중 본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비용의 부담 분(재적 대의원 수 중 종목단체의 대의원 비율만큼 부담한다)을 제외한 재원은 종목단체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원의 용도 등은 본회와 종목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종목단체에 등록한 팀(각 클럽) 단체의 장

② 종목단체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팀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종목단체의 정기운영위원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종목단체의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9조(위원장) 종목단체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불신임) ① 운영위원회는 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의결 제척사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종목단체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약간의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도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의 규약 및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회장선거,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도종목별연합회 중 본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할 수 있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전라북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도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6. 각 호의 요건변경이 필요한 종목단체는 변경내용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목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종목단체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본회, 다른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종목단체의 임원이 종목단체(본회, 다른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도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본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도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전라북도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중앙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본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본회 규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8조(임원인준 등) ①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정 승인 사항

제29조(규정 승인) ① 시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종목단체의 규정(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체육회는 종목단체가 규정(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에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도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목단체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회 규정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본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본회,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 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7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종목단체의 재산은 남원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도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본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0조(회계연도) 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3조(사무국) ① 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사무국의 운영 등) 종목단체는 사무국 구성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5조(해산) ① 종목단체는 재적임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46조(규정 변경) ① 도종목단체의 규약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종목단체의 규정(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규정 제·개정 등) ①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종목단체의 규정(규약, 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도종목단체의 규정(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정(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종목단체의 규정(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정(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정(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

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정(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임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16. 8.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남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남원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남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남원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회 출범 이후 남원시 종목단체규정에 의해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남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남원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⑤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남원시체육회의 가맹단체와 (구)남원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